

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석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978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8월 08일

발 의 자: 박 석 의원(1명)

찬 성 자: 김경훈, 김동욱, 김영철,
김용일, 김용호, 김원중,
김원태, 김재진, 김태수,
김형재, 김혜영, 남궁역,
남창진, 민병주, 박영한,
박춘선, 박환희, 신복자,
유만희, 유정인, 유정희,
윤기섭, 윤종복, 이봉준,
이종태, 임춘대, 최민규,
최유희, 홍국표, 황철규
의원(30명)

1. 제안이유

-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월 발표한 <지방자치단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보호·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 촉구 의견표명>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.
- 인권위 의견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, 합숙소에서의 폭력적 통제, 사생활 자유 침해 등 인권침해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경기부 소속의 선수 및 지도자 등의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사항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 실시 의무를 신설함.(안 제10조의2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국민체육진흥법」, 「직장운동경기부 표준 운영 규정」 등

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(인권보호 조치 등) ① 단장은 경기부 소속의 선수 및 지도자 등 단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
1. 폭력·성폭력 및 집단따돌림 등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
2. 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
3. 휴식시간,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
4. 임신, 출산, 육아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
5.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등

② 단장은 경기부 소속 선수 및 지도자, 선수관리 담당자 등 단원을 대상으로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	<p><u>제10조의2(인권보호 조치 등) ①</u> <u>단장은 경기부 소속의 선수 및</u> <u>지도자 등 단원의 인권보호를</u> <u>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</u> <u>이행하여야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폭력·성폭력 및 집단따돌림</u> <u>등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</u> 2. <u>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</u> <u>호 등을 위한 조치</u> 3. <u>휴식시간, 휴가의 보장 등을</u> <u>위한 조치</u> 4. <u>임신, 출산, 육아 등 모성보호</u> <u>를 위한 조치</u> 5. <u>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</u> <u>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등</u> <p><u>② 단장은 경기부 소속 선수 및</u> <u>지도자, 선수관리 담당자 등 단</u> <u>원을 대상으로 성희롱·성폭력</u> <u>예방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교육</u> <u>을 실시하여야 한다.</u></p>